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참여 및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토목분야	가. 교량 및 터널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토목구조 마) 도로 및 공항	나) 토목시공 라) 토목품질관리 바) 철도·삭도
		2) 안전관리	건설안전	
	나. 수리시설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수자원개발 마) 농어업토목 사) 토목품질관리	나) 토목구조 라) 상하수도 바) 토목시공
		2) 안전관리	건설안전	
	다. 항만	1) 토목	가) 토질·지질 다) 항만 및 해안 마) 토목품질관리	나) 토목구조 라) 토목시공
		2) 안전관리	건설안전	
2. 건축분야	가. 건축	1) 토목	가) 토질·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2) 건축	가)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나) 건축품질관리 라) 건축계획·설계
		3) 안전관리	건설안전	

비고

-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